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 운영분석*

-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in the Co-operative Universities for Operat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구 정 화 (Joung Hwa Koo)**

조 찬 양 (Chanyang Cho)***

초 록

이 연구는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대학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 사이트와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40곳을 대상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된 대학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시된 정보는 대학의 주요 기능인 연구나 교육에 관한 정보보다 대학행정 정보에 치우쳐 있었다. 둘째,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대학정보는 많은 오류와 잦은 수정으로 인해 신뢰성의 문제가 있었다. 끝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들은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방식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첫째, 공개된 대학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정보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둘째,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간의 상호연계성 확보를 통한 운영의 일원화를, 셋째, 공개된 대학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함께 공개할 것을, 마지막으로, 대학의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정보들이 보유·관리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대학내 기록연구사를 배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current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in the perspectives of both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services and to recomme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and services. The research collects and analyzes various raw data such as laws, guidelines, and manuals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and the portal sit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lso known as 'dae-hak-al-ri-mi', and data on each homepage of 40 cooperative universities selected as the research sample. At the result, the research found some limits in the current operation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first, the information posted on the university disclosure information system is mostly focused 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rather than information related to research or education within universities. Second, there are the high rate of error and frequent modification in the information posted on the disclosure information system. Third, the menus on bo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homepages of each cooperative university are useless or contents of the menus are empty. The research suggests some solutions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required to make up the current legal systems for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and to cooperate all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related to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within the united system and rule. Also, it is crucial to attach the metadata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when to post the information to the university disclosure information systems. Finally, it is necessary for each university to employ archivists not only to develop qualified university records to maintain the unique roles and value of universities but also to disclose reliable and authentic information to users and manage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키워드: 사전정보공개서비스, 대학정보공개, 대학알리미, 기록정보서비스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Record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hkoo@hnu.kr) (제1저자)

*** 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20164120@usk.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5월 24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6월 1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2): 169-197,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2.169]

1.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기록물에 담긴 정보는 생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그렇기에 기록물 관리주체는 기록물의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ugh 2005).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법제화했다(법률 제14185호 2016). 이는 이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의 정보를 미리 공개하게 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 대학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는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학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사전공개가 의무화되었다(교육부령 제96호 2016). 나아가, 1996년 정보공개법 제정과 그 시기를 같이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모든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하게 했고, 민원처리 또한 온라인상에서 해결가능하게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대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대학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대학알리미(URL: <http://www.academyinfo.go.kr>)’를 개설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마다 표준화된 정보공시 지침서를 제공하고 대학알리미와 해당학교 홈페이지이라는 두 운영체제를 통해 전국의 모든 대학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 대학정보 공개서비스에 힘써 왔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는 초기 교육자원의 불균형적인 분배가 심화되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공시 항목의 변경과 법률개정이라는 노력과 함께 이제 이 서비스는 10년차에 이르게 되었다(송인성 2010).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대학알리미’로 대표되어 운영되어 온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는 입시관계자 혹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요 이용자층으로 형성되면서 대학입시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단순 포털사이트 제공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정보공개서비스를 운영하는 관계자 및 관리자들도 역시 대학정보를 대학업무 수행중 생산된 부산물 정도로 보고, 이 행정업무 정보를 관련사이트에 공개한다는 인식과 수준에서 수동적으로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다(김경희, 이경호 2011). 그러나, 대학알리미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대학정보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대학기록물’이라는 인식과 함께, 대학기록물의 관리 및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대학정보공개서비스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대학정보의 사전공개서비스는 대학기록물의 관리와 공개라는 관점에서 현재 어떻게 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지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대학정보에 대한 사전정보공개서비스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40개를 중심

으로 이들이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를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지난 3년간의 운영현황과 관련된 자료들과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과 기록들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되, 공개된 대학정보 또한 대학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운영 방식에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그 문제점과 원인을 해결하고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이해

2.1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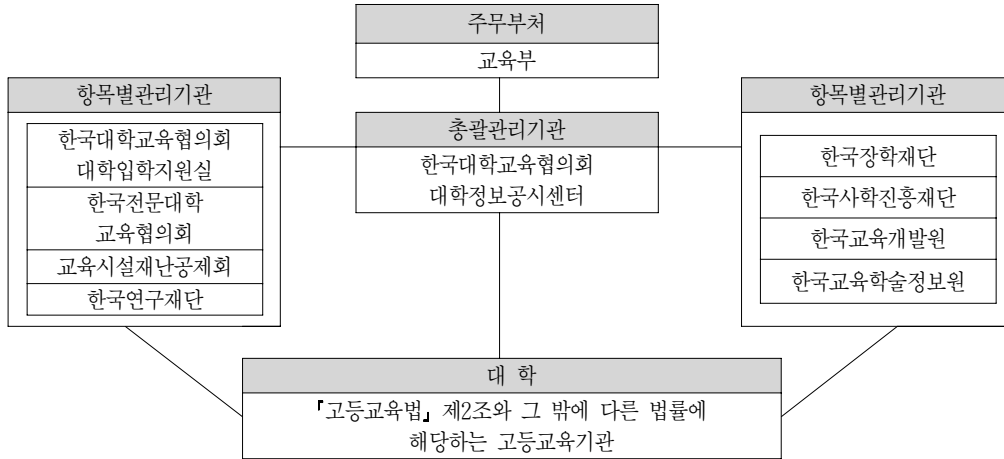
사전정보공개서비스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혹은 정보를 공개청구없이 이용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미리 선정하여 제공하는 정보공개 유형이다. 기존의 정보공개청구 방식에 의한 정보 제공방식은 정보공개를 청원한 이용자에 국한하여 청구한 내용만을 공개하는 다소 수동적인 정보서비스라면, 사전정보공개서비스는 각 법령에 따라 공시할 항목들을 미리 정하고 해당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정보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도 공공기관으로 간주되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법률 제14839호 2017), 이에 대학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학관련 정보도 법령이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사전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대학정보에 대한 사전정보공개제도를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체이자 주무부처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총괄관리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다. 각 정보공개 항목별 관리기관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있으며, 각 대학이 정보공개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 체제이다. 대학정보공시제도 추진체제에 해당되는 각 기관들의 상관관계는 <그림 1>과 같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

대학정보공시제도에서는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항목들을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또는 학교단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정보공개법」 제6조 1항에 따라 크게 14개의 공시정보 항목을 규정하고,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항목 62개를 공개횟수 및 공개시기와 함께 명시하되, 공시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표 1> 참조).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운영은 현재 이원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대학알리미를 통해서, 나머지는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정보가 공개되도록 운영된다. 우선, 대학알리미는 대학정보의 사전공개를 위한 일종의 포털사이트로, 8개의 항목별 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



〈그림 1〉 대학정보공시 추진체제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표 1〉 대학정보공시 항목(세부항목 62개 포함)과 공시기관, 공시횟수 및 공시시기

공시정보 항목	세부항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6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학	연 1회	6월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공시정보 항목	세부항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대학	연 1회	8월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8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수시	4월, 수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8월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연 1회	10월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8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4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6월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6월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6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6월

공시정보 항목	세부항목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대학	연 1회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10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10월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차. 강사 강의료	대학	연 1회	6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8월
	파. 안전관리 현황	대학	연 1회	10월

※ 출처: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별표 2.

시설재난공제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각 대학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양식에 맞게 수집·정리하여 총괄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대학알리미는 대학에서 공개해야 하는 전체 세부항목 62개 중 38개의 항목들을 8개의 항목별 관리기관을 통해 부분입력 또는 간접입력하고, 나머지 24개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이 직접 입력하여 대학정보가 공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

한편, 대학정보공시제도는 대학알리미 이외에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은 「정보공개법」 제7조와 「교육정보공개법」 제6조에 의해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

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절차는 법으로 규정받고 있지 않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을 통해 정보공개방법을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습득하여 해당 학교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는 각 대학기관의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메인화면 최상위 상단에 정보공개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배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하위메뉴 체계까지 상세히 지정하여 그 공개방식과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6). 행정안전부가 명시한 기관의 홈페이지 메뉴설정방식과 정보공개표준 항목에 대한 예시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각 대학기관 홈페이지 메뉴설정을 통한 정보공개방법 예시

상위메뉴	하위메뉴	내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절차, 청구방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사전정보공개공표	『정보공개법』 제7조 1항에 따른 사전공표관련 사항
	정보목록	『정보공개법』 제8조 1항에 따른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등

※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표 3〉 행정안전부가 명시한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 표준서식

생산일자	문서번호	단위업무	문서제목	담당 부서명	담당자 명	보존 기간	공개 여부
2017.00.00.	○○부서-001	정보공개제도운영	정보공개제도운영매뉴얼 개정	○○부서	○○○	10년	공개

※ 출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에서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체제 및 운영방식에 대해 법률과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대학정보 사전정보공개서비스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 사전정보공개서비스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공개된 대학정보는 단순히 대학행정 업무수행 중 생산된 단순데이터가 아닌, 대학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즉 대학기록물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서비스방식과 규범체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대학정보공시가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동안 기록학, 교육학 그리고 행정학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대학정보공개’ 혹은 ‘대학정보공시’ 등의 키워드로 지난 10년간의 연구물들을 검색한 결과, 총 42편의 관련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 중에서 대학내 사전정보공

개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비공개된 논문을 제외하고, 11편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여섯가지 주제(themes)로 대학정보공개가 연구되고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특정 공시항목들을 분석한 연구들로, 대학정보공시를 각 정보공개 항목별로 나누어 대학정보 관리체계의 오류를 분석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구중영 2009; 이광수 외 2010). 둘째, 정보공개제도의 사회적 설명책임성을 제안한 연구들로, 대학정보공개에 있어 사회적 설명책임성과 정보의 무결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임진희, 우수영 2009; 빙지원 2010; 김정현 2010). 특별히 공개된 대학정보의 품질에 많은 문제점과 운영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 대학정보시스템에 설명책임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 대학기록물에 대하여 무결성과 진본성에 문제가 없도록 공개된 정보의 품질평가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보공개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주로 면담법과 설문지법을 통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관점에서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송인성 2010; 이경미 2011; 김병주, 최송환 2013). 넷째, 정보공개 정책을 분석한 연구로 쿠퍼 등(Cooper et al. 2004)이 제시한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대학정보공시제도를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김경희, 이경호 2011). 다섯째,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 평가를 위한 기준을 개발한 연구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별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운영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지준오 2016). 마지막으로, 대학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연구로, 국립대학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옥계숙 2012).

이상에서 최근 10년동안 대학정보공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여섯가지 주제영역 중에서도, 특히 대학알리미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방법 또한 관리자들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면담법과 설문지법을 통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에 한정되어 왔음도 발견되었다. 특히, 지금껏 활용된 연구조사방법들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리자와 이용자의 의견과 관점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였으나, 이들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방향으로 그 내용이 기입될 가능성이 크다(Babbie 2007). 또한 표본이 적을 경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사회적 구조와 맥락을 다루기 힘들며 인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연구방법에 대한 한계 뿐 아니라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연구가 많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반성이 있어왔다(신현석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학내 사전정보공개서비스와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기록물과 기초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재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대학정보 사전공개제도 및 서비스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개입적연구방법(unobtrusive research)의 일환인 문헌조사방법(documentary research)을 통해 각 대학의 정보공개방식과 대학알리미의 운영방식을 비교분석(comparative content analysis)하고자 한다(Babbie 2007). 이 연구방법은 1966년 유진 웹(Eugene Webb) 외 3명의 연구자들이 처음 언급한 조사방법으로 연구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남기는 흔적들 즉, 증거자료와 기록물을 관찰하는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다. 이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방법의 가능성이 무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단서를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Webb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법에 의한 내용분석법을 통해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 운영현황을 조

사하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범위와 절차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첫째, 각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40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다(〈표 4〉 참조). 이 대학들은 교육부가 지정한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으로서 대학알리미 운영활성화와 협력체제 구축 및 대학정보공시지침 개선을 위해 지정되었다. 지정된 운영협력대학은 전국 대학정보공개 양식과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협의회 등 관련 이슈에 대해 대학정보공개 대상 대학들의 대표로서 제도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 특히, 이 40개 운영협력대학은

국립, 사립, 전문대학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설립유형에 따라 공개항목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대상 대학들이 고루 분포되어 대표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공개된 대학정보의 세부항목 62개를 대학의 주요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시되는 대학정보가 하나의 대학기록물의 성격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각 세부항목 62개를 대상으로 현재 행정요소로 분류된 공개 항목들(〈표 1〉 참조)을 대학의 주요 기능별로 재분류한 항목들과 비교·분석함

〈표 4〉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리스트

설립유형	학교명	지역	설립유형	학교명	지역	
국·공립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사립	㉡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 전주대학교	전북	
	㉣ 제주대학교	제주		㉣ 조선대학교	광주	
	㉤ 충남대학교	대전		㉤ 중앙대학교	서울	
사립	㉦ 가톨릭대학교	경기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	
	㉧ 건국대학교(서울)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경남대학교	경남		㉧ 한남대학교	대전	
	㉩ 계명대학교	대구		㉨ 한양사이버대학교	서울	
	㉪ 광주대학교	광주		전문대학	㉩ 경남정보대학교	부산
	㉫ 국민대학교	서울			㉪ 경인여자대학교	인천
	㉬ 덕성여자대학교	서울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	
	㉭ 동국대학교(경주)	경북	㉬ 동서울대학교		경기	
	㉮ 동아대학교	부산	㉭ 부천대학교		경기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	㉮ 상지영서대학교		강원	
	㉰ 삼육대학교	서울	㉯ 세경대학교		강원	
	㉱ 상명대학교	서울	㉰ 수원여자대학교		경기	
	㉲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 영진전문대학		대구	
	㉳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유한대학교		경기	
	㉴ 영남대학교	대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 영산대학교	경남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으로써 공개된 대학정보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는 대학알리미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정보가 공시되는데, 특히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정보들이 얼마나 빈번한 횟수로 수정되고 있는지, 수정율을 조사하고자 한다. 앞서 <표 1>에서 명시된 14개 공시항목과 62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정된 정보항목 건수를 파악한다. 또한 학사력을 기준으로 각 대학이 공개된 항목에 대해 언제(수정시기)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정보를 수정했는지(수정율)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개된 대학정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공시된 대학정보는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넷째, 운영협력대학이 각 홈페이지에서 대학정보를 공개할 때, 홈페이지 메뉴상에 공개된 정보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각 대학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알리미와 어떻게 상호연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공시된 대학정보의 신뢰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4. 분석결과

4.1 대학의 주요기능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대학알리미에서는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학정보 항목 총 62개를 5가지 주제, 즉 ‘학생에 관한 정보’, ‘교육여건에 관한 정보’, ‘교육연구성과에 관한 정보’, ‘대학재정/교육비에 관한 정보’와 ‘대학운영에 관한 정보’로 분류하여 해당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표 5> 참조). 공개하고 있는 세부항목들은 각 요소별로 학생과 관련된 정보가 19%, 교육여건에 관한 정보가 22.5%, 교육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가 16.5%, 대학재정/교육비 관련 정보가 25.5%, 대학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16.5%로 모두 16-25% 내외로 각 항목들을 고르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학알리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

<표 5> 대학알리미 공개항목 분류표

요 소	대학알리미 항목명	항목 수	비율(%)
학생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분포)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별 결과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4-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4-마 재적 학생 현황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4-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12-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12	19

요 소	대학알리미 항목명	항목 수	비율(%)
교육여건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6-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12-아 산업계 경력 전임교원 현황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12-거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14-마 기숙사 현황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14	22.5
교육연구성과	5-가 졸업생 현황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7-가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10	16.5
대학재정/교육비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사 적립금 현황 8-아 기부금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8-차 등록금 현황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9-가 등록금 산정근거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4-아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 14-차 강사 강의료	16	25.5
대학운영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규정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14-가 정관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14-사 교지(校地) 확보 현황 14-자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14-파 안전관리 현황	10	16.5
합 계		62	100

※ 출처: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URL http://www.academyinfo.go.kr>

야 하는 항목들은 대학의 다른 주요한 기능들보다 '행정' 기능 즉, 행정업무와 관련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은 본질적으로 행정 기능 이외에도 교육, 연구,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국가기록원 2016). 『대학 기록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대학의 주요 4대 기능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은 지식전수와 사회화 촉진으로, 연구는 연

구수행으로, 행정은 기관 존속, 학사, 지원으로, 공공서비스는 사회봉사와 문화진흥으로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시 각 기능을 세분하여 하위기능으로 두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6). 공시된 대학정보가 대학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학기록물의 공개 및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의 4대 기능과 8대 하위기능별로 정보공개 항목 62개를 재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대학의 주요 기능별로 재분류한 정보공개항목 분석

기능별 분류항목		내용	대학알리미 세부항목	항목수	비율
교육	① 지식 전수	학습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과 전수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분포)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4	6.5
	② 사회화 촉진	학습활동과 개인생활 등 교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인 학습활동	12-라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1	1.6
연구	③ 연구 수행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교수와 학생의 노력	7-가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2	3.2
행정	④ 기관 존속	학교 운영 및 관리, 제무와 인사, 시설 등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사 적립금 현황 8-아 기부금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8-차 등록금 현황 8-가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9-가 등록금 산정근거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4-가 정관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4-사 직원 현황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14-차 강사 강의료	21	33.9

기능별 분류항목	내용	대학알리미 세부항목	항목수	비율	
행정	⑤ 학사	학생모집·선별·입학, 재정 보조와 학술적인 상담, 졸업과정 기술, 학적, 입학·졸업증명, 교무기록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4-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4-마 재적 학생 현황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4-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5-가 졸업생 현황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6-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18	29
	⑥ 지원	대학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IT 관리, 학사지원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12-과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12-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14-마 기숙사 현황 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14-과 안전관리 현황	13	21
공공서비스	⑦ 사회봉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과 평생교육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1	1.6
	⑧ 문화 진흥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운영을 통한 문화 수집과 전파자로서의 역할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2	3.2
합계			62	100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대학의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 항목들을 재분류해 보면, 기관 존속(33.9%), 학사(29%), 지원(21%)을 포함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정보가 전체 정보의 83.9%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대학의 주요한 기능인 교육(8.1%)

과 연구(3.2%), 공공서비스(4.8%)에 관한 정보공개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용자가 필요로 할 것이라 판단되는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제공한다는 사전정보공개서비스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상기할 때, 현실적인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관련 정보공개에 치중해

왔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록물은 그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능 출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이명진 2009), 공시된 대학정보들은 대학의 주요 목적과 기능(교육, 연구, 서비스 및 행정)에 맞는 정보들을 균형있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2 각 대학의 정보공개 후 정보내용 수정율

대학알리미에서 최근 3년간 정보공개 항목 62개에 대해서 정보가 공개된 이후 오류 정보로 인해 얼마나 자주 정보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공개시기가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2014년에 615건, 2015년 548건, 2016년 420건으로 각 항목당 평균 8.5건의 정보가 공시이후 수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참조). 또한, 조사대상 40개 대학에서 최근 3년간 각

〈표 7〉 3년간 공개항목의 정보 수정 건수

기능별 분류항목		대학알리미 세부항목	2014	2015	2016	3년 평균
교육	① 지식전수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분포)	83	67	56	68.7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33	22	18	24.3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1	1	0.7
		12-가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19	14	11
	② 사회화 촉진	12-라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	2	5	2	3
연구	③ 연구 수행	7-가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2	2	1	1.7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1	3	1	1.7
행정	④ 기관 존속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39	33	4	25.3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1	1		0.7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1			0.3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4	2	1	2.3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1	1	1	1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2	1	2	1.6
		8-사 적립금 현황	2	1	2	1.6
		8-아 기부금 현황	2	1	2	1.6
		8-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0
		8-차 등록금 현황	50	42	38	43.3
		8-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1	4	1.7
		9-가 등록금 산정근거	26	35	27	29.3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6	4		3.3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7	3	1	3.7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2	1	1	1.3
		14-가 정관	7	2	3	4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7	5	1	4.3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			0.3
		14-사 직원 현황	3	2		1.7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5	1.7
14-차 강사 강의료	2	10	1	4.3		

기능별 분류항목	대학알리미 세부항목	2014	2015	2016	3년 평균	
⑤ 학사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56	57	55	56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1	2	3	2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1			0.3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35	17	30	27.3	
	4-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15	8	4	9	
	4-마 재적 학생 현황	24	19	16	19.7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7	3	4	4.7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3	1	3	2.3	
	4-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0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2		1	1	
	5-가 졸업생 현황	2	1	2	1.7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3	2	1	2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10	7	7	8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20	10	14	14.7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3	1		1.3	
	6-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6	1	6	4.3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97	68	43	69.3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5	7	4	
	⑥ 지원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4	10	5	6.3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1	0.3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4	5	4	4.3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19	14	11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0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4	6	8	6
		12-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0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4	2		2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8	27		11.7
14-마 기숙사 현황		18	2		6.7	
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1			0.3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2	8	3	4.3	
14-과 안전관리 현황			1	2	1	
공공 서비스		⑦ 사회봉사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1	0.3
	⑧ 문화 진흥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1	2		1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0
합계		615	548	420	527.7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정보를 공개한 이후
공시정보가 얼마나 많이 수정되었는지 그 수정
건수를 조사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대학당 수정된 건수는 평균 13건으
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수정한 대학은 2014

년 ㉔대학 62건, 2015년 ㉕대학 81건, 2016년
㉖대학 47건으로 공시 이후에 빈번한 수정이 있
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뿐 아니라, 몇몇 대
학에서는 공시연도가 지난 2~3년이 지난 뒤에
야 그 내용을 정정하는 사례들도 있었다.1)

1) ㉑ 대학, ㉒ 대학, ㉓ 대학, ㉔ 대학, ㉕ 대학의 경우, 2014년에 공시한 정보를 2016년 2월 혹은 5월이 되어야
비로소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대학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표 8〉 최근 3년동안 공시이후 대학정보 수정 건수

(조사 기준: 2017년 9월 1일 ~ 10월 1일까지, 단위: 건)

학교명	해당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평균 건수
국·공립	㉠	2	5	34	13.6
	㉡	11	34	11	18.6
	㉢	13	23	3	13
	㉣	5	23	7	11.6
사립	㉤	2	33	10	15
	㉥	26	42	26	31.3
	㉦	6	19	2	9
	㉧	10	15	9	11.3
	㉨	6	16	8	10
	㉩	6	6	47	19.6
	㉪	11	7	6	8
	㉫	4	0	3	2.3
	㉬	5	38	2	15
	㉭	17	11	7	11.6
	㉮	26	11	1	12.6
	㉯	6	38	27	23.6
	㉰	28	7	13	16
	㉱	0	8	1	3
	㉲	39	32	8	26.3
	㉳	6	33	4	14.3
	㉴	62	6	8	25.3
	㉵	12	53	10	25
	㉶	37	7	4	16
	㉷	25	40	13	26
㉸	1	61	7	23	
㉹	0	4	36	13.3	
㉺	0	39	9	16	
㉻	9	81	9	33	
전문대학	㉼	17	6	4	9
	㉽	13	1	1	5
	㉾	1	5	2	2.6
	㉿	7	9	4	6.6
	㊀	0	5	8	4.3
	㊁	1	7	2	3.3
	㊂	0	8	1	3
	㊃	6	8	7	7
	㊄	3	0	0	1
	㊅	5	3	2	3.3
	㊆	5	12	0	5.6
	㊇	8	5	6	6.3
대학당 평균 수정건수					13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대학 정보공개에 구체적인 범위, 주기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오류정보를 자유롭게 정정하게 하는 조항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각 대학이 공개시기를 지키고자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이후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우선 공개시기를 지켜 법적 문제와 제재를 완화하고 추후 수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공개된 정보가 빈번히 수정되어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진 근본원인이라 하겠다. 위의 설명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해 40개 대학 별로 3년동안 정보공개 이후 수정한 정보항목 건수를 각 월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월 평균 수정 건수는 60.3건, 11월에는 78.6건, 그리고 2월에는 75.6건으로 다른 달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에 대학 공개가 집중으로 이루어지는 6월과 10월 이후에 즉,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직후에 많은 수정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이 법적 공개시기에 맞게 잘못된 정보라도 우선 공개하여 법적 제재를 피하고 추후 수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3 각 대학 홈페이지 정보공개 운영현황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대학정보를 사전공개함에 있어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운영 준수 사항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다음 세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각 대학 정보공개 메뉴 운영 여부 및 메뉴 위치, (2) 사전정보목록 공개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법」과 「교육정보공개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3) 각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가 상호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년부터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개서비스의 개념과 정보목록 및 원본공개 운영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각 대학이 대학정보를 공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10>은 조사대상 40개 대학의 홈페이지에서의 정보공개 사항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현용기록물에 대한 정보목록을 제공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공개에 있어 대학마다 큰 편차가를 보이고 있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메인 메뉴를 정부가 명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 메뉴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40개 대학 중 단 3개(㉠대학, ㉡대학, ㉢대학) 뿐이었다. 실제 정보공개를 위해 홈페이지에 메뉴를 설정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대학은 40개 중 22개 대학으로 조사되긴 했으나, 그 운영방식은 다분히 형식적이어서 정보내용의 식별이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각 홈페이지상의 정보공개를 위해 메뉴를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 매뉴얼』에서 명시한 대로 공개하는 유형 즉, 메인메뉴로 운영하는 유형과 대학 홈페이지 메인메뉴의 하위메뉴로 운

〈표 9〉 최근 3년동안 학사력 기준 대학 정보 수정 건수

(조사 기준: 2017년 9월 1일 ~ 10월 1일까지, 단위: 건)

학사력 학교명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2	3			6	4	11	2	9	1	3		41
㉡	2	11		1	15		2	5	11	4		5	56
㉢		3	1	3	3	1	2	5	10	1	1	9	39
㉣	6	1	2	2			4	3	2	5	3	10	38
㉤				2			1		17	13		6	39
㉥		10	1	3	16	2	2	17	28	12	1	9	101
㉦			3		11	1	1			4	6	2	28
㉧										3			3
㉨	3				8	2				1	1		15
㉩			2	9	1	4	13		2	1	2		34
㉪				1	2	3	1	1	7	6		9	30
㉫	1		38		8	1	1	1		5	4		59
㉬										6		2	8
㉭		2		2	5	9		3	1	1		1	24
㉮									5	1		1	7
㉯		6		1	19	4	3	2		3	1		39
㉰	3		7		1	3	2	4		4	2	1	27
㉱		1		3	2			3	2	3		22	36
㉲	2	3	4	2		1	1		2	2	1		18
㉳			6	12	13	10		6		8	1		56
㉴	2	9	6	1	13	4	9	6		21			71
㉵				4			2	2			1	1	10
㉶			1			1	12	5	17	1		11	48
㉷				2			7						9
㉸				4		3	1	3		6	1	3	21
㉹	1			21	27	4	7	6		10	2	1	79
㉺	2	1		2			18		14	1	2	3	43
㉻		7				12	19		8		30		76
㉼					1				1			1	3
㊱	1	1	1			1			5			1	10
㊲	5	2	2	2	2	9	3		32	17		1	75
㊳			2	2	2	3	1		3	1	1	33	48
㊴		3	1	4	4	1		15	9	8	1	32	78
㊵		2	5		2			44	8	3		5	69
㊶	5	7							1			4	17
㊷		4		1		2	21	1	6	1		4	40
㊸		2	15		17	1	5	4		3		1	48
㊹	3	3		1	2	3	2	1	1	3			14
㊺			1	2	3	3		5	35		1	49	99
㊻	6			7		11		2	1				27
월별 평균 수정건 수	14.6	27	32.6	31.3	60.3	34	50	48.6	78.6	53	21.6	75.6	527.2

〈표 10〉 각 대학 홈페이지 정보공개 운영 현황

대학	(1) 정보공개 메뉴개설	(2) 사전정보목록	(3) 대학알리미와의 연계 운영	기타 참고사항
㉠	X	X	X	
㉡	○ (정보민원 메뉴 하위메뉴)	○ (열거식, 엑셀파일)	○	정보공개 안내와 청구만 존재
㉢	○ (메인 메뉴)	○ (열거식, 엑셀파일)	○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	○ (메인 메뉴)	○ (열거식, 엑셀파일)	○	
㉤	X	X	X	
㉥	○ (메인화면 하단 공개청구만 운영)	X	○	청구공개만 있음
㉦	○ (메인화면 하단)	○ (엑셀파일)	○	
㉧	○	○ (실제 운영 안함)	○	
㉨	X	X	X	
㉩	○ (메인화면 하단)	○ (열거식)	○	
㉪	○ (메인화면 하단)	X	X	청구공개만 운영
㉫	X	X	X	
㉬	X	X	X	
㉭	○ (메인화면 하단)	X	○	
㉮	○ (메인화면 하단)	X	○	예산관련 내용만 청구가능
㉯	○ (학교소개 하위메뉴)	X	○	
㉰	X	X	○	
㉱	X	X	X	
㉲	X	X	○	
㉳	○ (메인화면 하단)	X	○	정보공개 안내와 청구만 존재
㉴	○ (메인화면 하단)	X	있지만 실행불가	정보공개 제도 안내정도
㉵	X	X	○	
㉶	○ (대학현황 하위메뉴)	X	○	
㉷	○ (학교소개 하위메뉴)	○ (2015년 이후 운영안함)	○	
㉸	X	X	○	
㉹	○ (대학현황 하위메뉴)	○ (열거식)	○	

대학	(1) 정보공개 메뉴개설	(2) 사전정보목록	(3) 대학알리미와의 연계 운영	기타 참고사항
㉠	X	X	○	
①	○ (메인화면 하단)	X	○	정보공개청구만 운영
②	○ (메인화면 하단)	X	○	
③	X	X	X	
④	X	X	X	
⑤	X	X	○	
⑥	○ (대학소개 하위메뉴)	○ (열거식)	○	
⑦	○ (메인화면 하단)	○ (실제 운영안함)	○	
⑧	○ (대학현황 하단)	○ (실제 운영안함)	X	
⑨	X	X	○	
⑩	○ (대학정보 하위메뉴)	○ (실제 운영안함)	X	
⑪	○ (메인화면 하단)	○ (실제 운영안함)	○	
⑫	○ (메인 메뉴)	○ (열거식, 엑셀파일)	○	

영하는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운영하는 유형,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메인화면 하단에서 운영하는 유형은 상단 메인 메뉴에서 운영하는 유형보다 메뉴 크기가 매우 작아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홈페이지 상에서 식별이 매우 어려운 메인화면 하단에 정보공개 항목을 메뉴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개 목록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40개 중 14개 대학만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에 대한 목록 메뉴와 그 내용을 기재하여 대학정보를 공시하고 있었다. 14개 대학중에서도 실제로 사전정보목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7개 대학(㉠대

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뿐이었다(〈표 10〉 참조). 〈표 11〉은 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정보목록을 운영 유형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대학, ㉢대학, ㉣대학의 경우 사전정보 공개 목록 메뉴를 열거식과 엑셀파일 업로드 형식 모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정기 공개목록은 일정목록을 홈페이지에 열거식으로 명시하고, 행정적으로 월별로 생산된 기록목록들은 엑셀파일로 공개하고 있었다. ㉣대학, ㉤대학, ㉥대학은 열거식 방법으로 공개시기와 주기가 정해져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목록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반면에 ㉦대학, ㉧대학, ㉨대학, ㉩대학, ㉪대학은 사전정보목록에 대한 메뉴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이 확

〈표 11〉 사전정보공개목록 내용분석

목록유형	목록내용	해당대학
열거식	•교육과정, 휴학, 장학생 선발지침,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내용, 운영규정 등 각 부서별 행정 정보	㉠, ㉡, ㉢, ㉣, ㉤
엑셀파일	•월별 각 부서의 단위과제 목록	㉠, ㉡, ㉢, ㉤
열거식	•교육과정, 휴학, 장학생 선발지침,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내용, 운영규정 등 각 부서별 행정 정보 •대학의 도서발간에 관한 정보 •대학알리미의 62개 항목	㉥
열거식	•교비 예·결산서, 산학협력단 예·결산	㉦

인되었다. 이렇듯 명목상 메뉴만 설정되어 있거나 정보내용의 부재로 인해 정보접근성과 이용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도 조사되었다.

끝으로,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와 대학알리미와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였다(〈표 10〉 참조). 대학알리미와 대학홈페이지와의 연계여부는 28개 대학만이 대학알리미와 연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28개 대학은 대학알리미 목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과 실제로 대학알리미를 해당 학교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외 나머지 대학은 대학알리미와 연계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5.1 주요 문제점

지금까지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 운영현황을 대학 주요 기능별로 정보공개 항목을 재분류하여 공개된 대학정보가 대학기록물의 관리 및 서비스의 관점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

리·제공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였고, 정보공개 세부항목 각각에 대한 정보 수정율을 조사하여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끝으로, 각 대학 홈페이지별로 정보공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사전정보공개서비스 운영에 있어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 내용을 대학의 기본 기능별로 재분류했을 때, 교육, 연구, 행정, 공공서비스 중 행정기능에 관한 정보에 다수 편중되어 있었다.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것이라 판단되는 정보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제공한다는 사전정보공개서비스의 기본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행정기능과 관련된 정보요구가 큰 것으로 인해 여태껏 행정관련 정보공개에 치중해 왔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전공개되는 정보가 대학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대학기록물’인 것을 또한 상기한다면, 대학기록물은 대학이 존재하는 의의와 기본 기능이 무엇인지 재고한 후, 공개되는 정보내용의 재구성과 보충이 필요하다. 즉, 기록물은 그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의 목

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능 출처주의’에 따라 대학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정보가 균형있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명진 2009).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 연구, 공공서비스 기능은 교육과 연구의 범위를 넘어 사회발전에 관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학기록물은 행정기록물 보다는 비행정기록물이 많다는 것이 다른 기록물과 구분되는 주요 특징이라 하겠다(강연아 2006). 그러나, 현재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특성상, 행정기록물에 담긴 정보만을 중점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비행정 기록물과 행정기록물은 전시회나 방문 열람 등의 물리적 접근을 통해서만 이용가능하고 온라인 상 전자기록물로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강연아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되는 대학정보가 대학의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모두 포괄하고, 행정기록물 이외에도 비행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항목설정에 있어 대학정보공시제도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공개 이후 잦은 내용 수정으로 공시된 정보의 진본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이 조사되었다. 공개된 대학정보의 빈번한 수정은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일축시킨다. 공시된 대학정보의 신뢰성 문제는 정보의 정정시기와 범위에 대한 법적 재제의 한계에서 그 근본원인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현재 『교육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된 정보와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교육정보공개법 제7조 제3

항). 또한, 법률에 따라 시정과 변경까지도 명령할 수 있다(교육정보공개법 제10조). 달리 말해, 이는 법률상 교육부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부분만 명시하면 되고, 대학내 자체의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 조치나 재제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각 대학은 공개정보에 대해 그동안 신고 혹은 교육부 확인을 통해 내용 정정이 이루어져 왔고, 그 정정시기는 아무런 규제없이 임의대로 수정해 왔다. 이로 인해 정보 공개기간동안 이용자는 수정되기 전의 허위 정보를 이용할 위험이 있고, 대학은 이 사실을 악용하여 오류정보를 수정하지 않고도 정보를 계속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정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운영방안의 표준 및 법률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대학 홈페이지상의 정보공개 메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학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메뉴의 목록공개에 있어서도 대학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록을 메뉴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도 그 절반 가량이 단순히 메뉴만 개설하여 놓고 실제로는 정보를 기재해 놓고 있지 않았다. 이렇듯 명목상의 메뉴만 설정해 놓고 있거나 정보공개내용의 부재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뿐 아니라, 대학의 사전정보공개서비스 중 원문공개서비스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각 대학마다 원문공개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된 대학정보의 진위여부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바, 대학에 대한 허위정보 및 과대·과장광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오류정

보 신고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도 확인되었다.

넷째, 각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간의 상호연계없이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정보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대학정보와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적으로 대학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과 「교육정보공개법」이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정보공개법」 제4조에 의해 이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동법 제12조에 의해 행정안전부를 교육부로 해석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6조부터 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에서 ‘공공기관’은 ‘교육관련기관’으로 해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학알리미와 각 학교 홈페이지는 서로 연계해서 운영되어 상호보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학알리미는 총괄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 운영되고 각 학교홈페이지는 해당학교에서 관리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는 한 대학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을 재탐색해야 하는 어려움과 그 공개된 내용이 각각 상이함으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이 조사되었다.

5.2 개선방안

5.2.1 대학 정보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대학정보가 사전에 공개되는 만큼 대학의 설명책임성 강화가 기

본이 되어야 한다(김정현 2010). 대학정보공시 제도가 외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공개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면 제도의 활용가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사전공개된 대학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되는 전제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이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는 잦은 수정과 정정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음으로 임의 수정이 빈번히 발생했던 바, 공개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시기의 규정과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정정가능 시기에 대해 해당연도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정정시기를 월 단위나 특정 기간을 두고 법적으로 제재하여 정정제도의 악용과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정보에 대해 사전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정보를 공개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즉, 이미 공개된 정보에만 국한되어 확인과 검증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대학은 공시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바로 대학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관리기관이나 총괄기관에서 원본기록과 대조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 이후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점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전 검증단계를 거침으로 대학알리미의 정보공개 시기와 방법에 변화를 가져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된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보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후 오류정보가 수정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지금의 긴 공백기간도 막을 수 있다.

5.2.2 주무부처 및 관련기관의 연계성 확보

대학알리미를 통한 대학정보공시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와의 상호연계성 확보는 공개된 대학정보의 수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대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대학 기록물이 활용가치있는 정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본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integrity) 그리고 이용가능성(usability)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임진희 2013). 이 두 기관의 상호연계는 공개된 대학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증과 이용가능성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대학알리미는 「교육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대학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전반적인 부분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공개에 대해 각 주무부처가 역할 및 책임을 나누어 갖고 있는데, 이런 복잡구조로 인해 두 기관이 연계하지 않고 따로 정보공개를 함으로 인해 정보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써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이 복잡구조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대학의 정보공개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알리미는 가공된 대학정보만을 사전에 공개한 것에 반해, 「정보공개법」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정보공시

제도는 원문공개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기관이 상호연계하여 원문 그대로의 정보와 가공된 정보가 동시에 공개되어 서로 연계되어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정보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관련 두 기관의 상호연계성의 확보는 지금까지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각 대학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대한 개선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2.3 공시정보 수정에 대한 메타데이터 공개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되는 대학정보는 항목내용에 맞게 가공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때, 공개된 정보와 함께 그 메타데이터까지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ISO 15489-1에 따르면, 기록은 내용과 처리행위조차 문서화하여야 하는데, 이때 원본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기록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체계에서는 기록물의 진본성과 맥락 정보가 유지될 때, 기록정보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익한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최종결과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산출되는 과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메타데이터까지 공개될 필요가 있다. 메타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생산기관과 담당자, 생산날짜, 정보 이관경로 및 시기, 정보 산출과정을 담은 정보, 그리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메타데이터의 공개는 정보공시 후 수정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이용자가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정보의 진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2.4 공개항목에 대한 재구성과 기록연구사의 배치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하는 정보 항목들은 대학의 주요 4대 기능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대학의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는 대학입시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치중하여 대학기능 중 행정기능에 치중된 정보공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의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는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대학정보 사전공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기록물이 생산되는 단계부터 보유가치와 기능에 맞게 관리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의 사전정보공개서비스에 공개된 항목이 행정기능에 국한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대학내 기록연구사의 부재를 들 수 있다(김정현 2010). 대학 내의 기록연구사의 부재는 그동안 대학에서 공개하는 대학정보는 행정업무 중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로서의 정보만을 공개하는 지금의 현실을 초래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내에서 기록연구사의 배치는 정보공개 항목을 대학기록물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게 하고 이용자가 대학의 내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단순 대학행정 정보의 공개가 아닌, 대학의 본연의 가치와 기능이 담긴 정보 즉 대학기록물을 개발·관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기록연구사를 배치하고, 이를 통해 대학정보 공개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3 결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고,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교육분야에서도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의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학정보에 대한 사전공개서비스는 시행 10년 동안 정보공시 항목의 변경과 법률 개정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단계에서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긍정적인 활용방안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대학정보에 대한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상황에 대한 여러 기초자료 및 기록물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기록관리 분야에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혹은 교육기관의 정보공시제도에 국한하여 연구가 따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지만, 본 연구는 대학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대학정보공시제도와 사전정보공개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이전 연구가 대학정보공개서비스 실태를 기초자료 및 기록물을 조사하여 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대학의 사전정보공개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어 신뢰성과 이용접근성이 높은 대학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현 정보공개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법령과 필수항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 즉 대학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대학

정보 사전공개서비스의 활성화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각 대학교의 정보공개 운영방식과 정보공시제도를 분리한 이원적 연구가 아닌 상호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꾀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연아. 2006. 『대학 매뉴스크립트 검색도구 사례분석과 시안』.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구중익. 2009. 대학도서관의 정보공개 및 공시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327-351.
- 국가기록원. 2016. 『2016 대학 기록관리 매뉴얼』. 대전: 국가기록원.
- 김경희, 이경호. 2011. 대학정보공시제 정책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탐색. 『한국교육연구』, 28(2): 341-364.
- 김익한. 2006. 전자기록의 진본 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 『기록학연구』, 14(2): 91-117.
- 김정현. 2010.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정보공시의 실천적 과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7.9.10]. <<http://www.academyinfo.go.kr/>>.
- 방지원. 2010. 『대학정보공시제의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송인성. 2010.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대학정보공시 담당자의 인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전공.
- 신현석. 2015. 대학원 정보공시 실태 분석 및 강화 방안. 『한국교육학연구』, 21(1): 139-170.
- 옥계숙. 2012. 『국립대학의 정보공개제도와 운영실태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이광수, 안성진, 박진섭. 2010. 대학정보공시를 위한 관리기관간 자료연계 내실화 방안 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3(2): 71-80.
- 이명진. 20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형태에 관한 연구: 정보공개회피요인과 부처기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임진희, 우수영. 2009. 정보공개 및 공시 대응을 위한 대학의 설명책임 매커니즘 고도화. 『정보관리학회지』, 26(1): 107-124.

- 임진희. 2013. 『전자기록관리론』. 서울: 선인출판사.
- 지준오. 2016.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개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농산업교육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7.9.10]. <<http://www.kcue.or.kr/index.htm/>>.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7. 『2017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행정안전부. 2016. 『2016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서울: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법률 제14839호, 2017.2.26.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12호, 2017.1.3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 Cooper, B. S., L. D. Fusarelli, and E. V. Randall. 2003.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Pugh, Mary Jo. 2005.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The Society for American Archivists.
- Webb, E. et al. 2000. *Unobtrusive Measures*. Thousand Oaks, CA: Sag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t on Public Disclosure of Public Institution*, Law 14839, 2017.2.26.
- Babbie, E. 2007.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Seoul: Cengage Learning Korea Ltd.
- Bing, Ji Won.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Disclosure of University Information*.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Act*, Presidential Decree 28211, 2017. 7.26.
-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Presidential Decree 27812, 2017.1.31.
- Gu, Jung-Eok.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Information isClosure System and the Disclosure of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327-351.
- Higher Education in Korea Homepage. [online]. [cited 2017.9.10]. <<http://www.academyinfo.go.kr/>>.

- Jee, Jun Oh. 2016.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Related to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perating*.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ang, Yun Ah. 2006. *A Case Study on Finding Aids of University Manuscripts and the Tentative Plan*.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Ik-Han. 2006. "The model of appraisal method on authentic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4(2): 91-117.
- Kim, Jeong Hyun. 2010. *A Study on the Practical Issues of Information Disclosure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 Master thesis, Myongji University.
- Kim, Kyung-Hye and Kyung-Ho Lee.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8(2): 341-364.
-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omepage. [online]. [cited 2017.9.10].
<<http://www.kcue.or.kr/index.htm/>>.
-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7. *2017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Plan and Guidelines*. Seoul: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Lee, Gwang Su, Seong Jin Ahn, and Jin Sub Park. 2010. "Research on an Effective Plan for Data Association amo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College Information Disclosure."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3(2): 71-80.
- Lee, Myoung Jin. 2009. *A Study on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Focusing on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Factor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6. *2016 Information Disclosure Operation Manual*. Seoul: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6. *2016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Manual*. Dea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Ok, Kue Suk. 2012. *A Study of Public Information System and of the Operation in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hin, Hyun Seok. 2015. "An Analysis on Graduate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its Alternatives for Development."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1(1): 139-170.
- Song, In Sung. 2010. *A Study on Recognition Analysis about Person in Charge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roblem and Improvement Proposal*.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 Special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Educational Institutions*. Law 14839, 2017.7.26.
- Special Rules of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Institution*. Education Ordinance No. 96,

2016.4.20.

Yim, Jin-Hee and Su-Young Woo. 2009. "Enhancement of Universities'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Disclos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107-124.

Yim, Jin-Hee. 2013. *Introduction to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eoul: Sun-in Publication.

